

되겠습니다. 5페이지 이하는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의과정에서 참고하실 자료로서 내무부장관님의 정원승인 공문서 사본과 현행조례 전문 그리고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전문 그리고 내무부장관의 정원승인권한 근거규정 등을 참고자료로 올렸습니다.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 설치 및

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○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.
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가. 제출일자 : 1992년 1월 8일
- 나. 회부일자 : 1992년 1월 9일

3. 제안이유

- 도의회 효율적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(법률 제4464호, '91. 12. 13)되고 내무부장관으로부터 (지기 01210-12628 '91. 12. 28)도의회사무직원의 정원 9명이 보강됨에 따라
- 충청북도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중 제명을 충청북도의회사무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로 개정하고 각 조의 "사무국"을 "사무처"로 "사무국장"으로 개칭하고 현재 "39명"으로 되어 있는 사무직원 정수를 "48"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조례제명, 사무국명칭, 사무직원의 정수개정(조례제1조내지제4조)

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명 : 충청북도 “의회사무국”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충청북도 “의회사무처”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조내지 제4조중 “사무국”, “사무국장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조내지 4조중 “사무처”, “사무처장”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4조중 사무직원정수 “39명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4조중 사무직원정수 “48명”

5. 검토의견

도의회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(법률 제4464호 '91. 12. 31)되고 지난 1991년 12월 28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도의회사무국의 사무처리 부속인력 9명(운영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전문위원 2명, 위원실보조 2명, 기록요원 2명, 자료조사자원 2명, 부의장실 안내요원 1명)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8항 및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원 승인됨에 따라 조례제명 및 사무국 명칭과 사무직원 정수를 현재의 “39명”에서 “48명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<p>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.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 이병두위원 위원장님!</p> <p>○ 위원장 김연권 이병두위원님 말 씀하세요</p>	<p>○ 이병두위원 이병두입니다. 물론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의회사 무국 설치 및 사무국 직원의 정수 등에 관 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연관된 문제 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한가지 물 어보고 싶어서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문제와 연관된 문제 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</p>
--	---